

의안번호	2126545
의 퇴 인	김승수의원
회 답 일	2024.03.13.
추계번호	24B0190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5조의2 (친수지구에 관한 특례) 신설	• 국가하천 친수지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주민친화적 활용을 위하여 해당 지구에 대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·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27조1)에도 불구하고 시·도지사의 권한으로 함(제1항) • 시·도지사가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내 국가하천에 대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하천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수립·변경하여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함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(제2항) - 관할구역 내 시장·군수·구청장 의견 수렴(제1호) - 환경부장관을 포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(제2호) - 공청회의 개최(제3호) -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(제4호) 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시기·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대상 혹은 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5조의2 (친수지구에 관한 특례) 신설	·미첨부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1) 「하천법」 제27조(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·보수) ① 하천관리청(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계획(이하 "하천공사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하천공사를 시행하려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□ 친수지구에 관한 특례(안 제45조의2 신설)

- 개정안은 시·도지사가 국가하천 내의 친수지구에 대하여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황에 맞는 하천 친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
-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하천공사시 대규모 친수시설의 설치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시행중이며, 개정안에 따라 시·도지사가 친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하천공사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게 될 경우 하천공사시행계획 수립 비용이 추가재정소요로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 개정안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시기·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의 친수시설 설치 사업의 내용과 범위, 계획 수립과 관련된 절차를 현시점에서 구체화하기가 어려우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가 곤란함
- 참고로 현재 친수시설 설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나, 5대강 및 67개 국가하천의 친수시설 등의 하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‘국가하천유지보수’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. 또한 서울특별시, 대구광역시 등에서 하천 친수공간 설치·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며 구체적인 사업 현황은 [표 2]와 같음

[표 1]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 예산 현황: 2022~2024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2	2023	2024
국가하천유지보수 (5331-308)	247,953	250,763	261,406

주. 「하천법」 제27조(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·보수)에 따라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, 호안, 배수시설, 저수로, 16개 다기능보, 홍수조절지, 친수시설 등 하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수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하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임

[표 2]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추진중인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

지방자치단체	사업명	대상 하천	추정 사업비(안)
서울특별시	서울형 수변감성도시	홍제천, 중랑천 등 20개 국가·지방하천	620억원
	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	한강	미정
대구광역시	금호강 그랜드플랜	금호강	2,810억원
충청북도	미호강 맑은물 사업 마스터플랜	미호강	1조 8,130억원
대전광역시	대전 3대하천 푸른물길 그랜드플랜	갑천, 대전천 등	2조 7,730억원

주. 환경부 하천계획과 제출자료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지수현	이유미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지수현	02-6788-3735	zisu37@nabo.go.kr